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1039
------------	------

2019. 12. 1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9. 9. 26. 김태수 의원 1인 발의 (2019. 10. 22. 회부)

2. 제안이유

-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의2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김태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치적 견해, 건강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토록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최근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1)가 개정 (2019.8.6.)되어,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주거기본법」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기존 주민등록번호에 추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이는 개인정보의 침해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라는 공익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신설된 사항²⁾이며, 주거실태조사의 시행을 위해 표본 가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는 불가피한 실정³⁾인 것으로 파악됨.

1)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주거비 보조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교육, 채용·배치에 관한 사무

2) 출처 - 「주거기본법 시행령」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준’에 관한 규제영향 분석서 (국토교통부), [붙임-4] 참고

3) 출처 -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국토교통부), [붙임-3] 참고

-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직결된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거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건강 관련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4가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이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과 내용⁴⁾이 「주거기본법」상 ‘주거실태조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겠으나,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에서 ‘해당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이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는 내용적으로 「주거기본법」 제20조의 주거실태조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바, 조례 제4조제1항에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해당함을 명시함으로써 「주거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겠음.

4) 실태조사의 내용 (조례 제4조제1항)

1.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u>시장</u>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4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u>시장</u>은 제4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제4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u>시장</u>은 「주거기본법」 제20조에 의하여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현행과 같음</u>〉</p>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은정
연락처	02-2180-8208
이메일	urbanth@seoul.go.kr

【붙임-1】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17. 6. 27.>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주거비 보조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교육, 채용·배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9. 8. 6.]

【붙임-2】 주거실태조사 관련 규정

○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8. 12. 31., 2019. 4.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안전 취약거처"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다음 각 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택이외의 거처를 말한다.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에 따른 고시원업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라. 「건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로 설치된 가설건축물

마.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로서, 차임을 지불하고 숙박하는 거처

바.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거처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현황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붙임-3】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2019.5.23)

(추진배경)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건강, 정치적 견해 등),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처리를 위해서는 **개별 법령 근거** 要
 - 주거실태조사는 **표본 가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가 불가피** 한 바,
 - 주거기본법령 및 주거약자법령 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23), 고유식별번호(§24)의 취급 및 처리 허용 규정 필요**
 - * 장애인 등급, 유형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건강과 관련한 ‘민감정보’

(조문별 개정내용) 주거기본법 시행령 §17 개정

- (현행) 주거실태조사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의 취급 및 처리 허용 규정 부재**
- (개정안)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건강), 고유식별번호 취급 및 처리 허용 규정 신설**

< 주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고유식별번호-----.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신설)	3.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4·5 (생략)	4·5 (현행 제3호와 제4호와 같음)

【붙임-4】 「주거기본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발취 (2019.5.23)

1. 추진 경과

개인정보 처리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과 사전 협의완료하였으며, 별도의견 등은 없었음

2. 향후 평가계획

주거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의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대국민 주거지원 서비스 강화

3. 종합결론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는 있으나,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라는 달성하고자하는 공익이 보다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필요·타당한 규제 신설